

※ (총괄) 개정 전·후 감면율 비교

구분	개정 전		개정 후			
	기본	신성장·원천 (+15%p)	기본		신성장·원천 및 국가전략기술 (+15%p)	
		수도권	비수도권	수도권	비수도권	
대기업	취·재 35% 과밀억제권역외	취·재 50%	감면 종료	취·재 35%	-	취·재 50%
기업	취·재 35%	취·재 50%			취·재 45%	취·재 60%
초기중견	취·재 50%	취·재 65%	취·재 30%	취·재 45%	취·재 45%	취·재 60%
중소기업	취 60% 재 50%	취 75% 재 65%	취·재 45%	취·재 60%	취·재 60%	취·재 75%

< 3. 사후관리 합리화 >

- 추징조문에 '정당한 사유'를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합리화하고,
 - 신축의 경우 비교적 공사소요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고려하여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유지하고, 완화대상이 토지임을 명확화

□ 적용요령

-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§7)